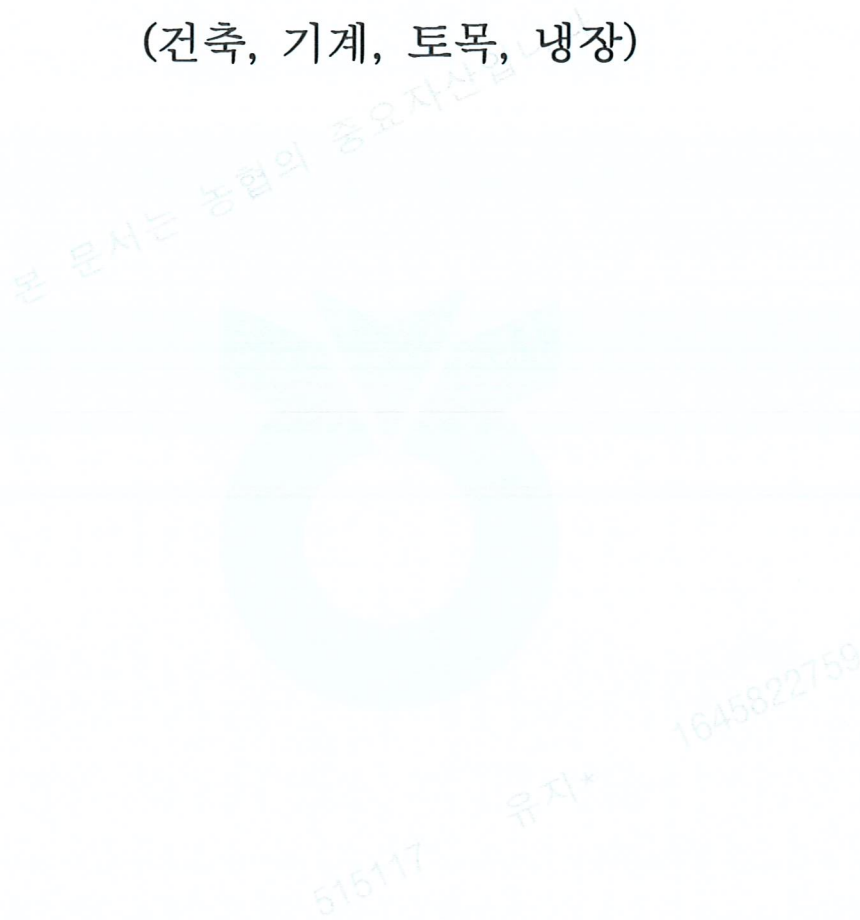


현 장 설 명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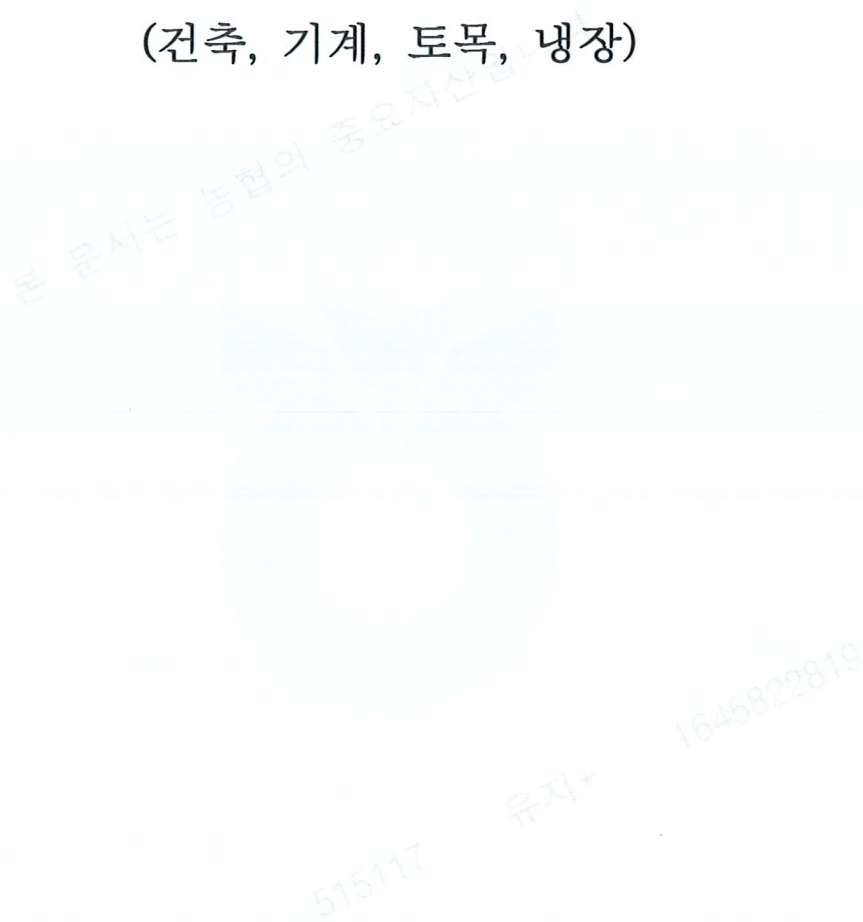
공사명 : 서순창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건축, 기계, 토목, 냉장)



서순창농업협동조합

현 장 설 명 서

공사명 : 서순창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건축, 기계, 토목, 냉장)



서순창농업협동조합

목 차

I. 공사개요

II. 일반사항

III. 특기사항

I. 공 사 개 요

1) 설계개요

○ 증축동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북흥면 정산리 793 외 1필지
대지면적	4,990.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지역,지구	농림지역, 상태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용 도	창고시설(농산물산지유통시설)
구 조	일반철골구조
층 수	지상 1층
최고 높이	10.8m
건축면적	458.05㎡ (생강선별장동)
연 면 적	458.05㎡ (생강선별장동)
건 폐 율	25.08%
용 적 율	24.24%
주요외장재	그라스울 판넬(불연재)
주차대수	해당없음
정 화 조	해당없음

3. 공사범위

- 1) 건축공사 (임시소방시설 포함)
- 2) 토목공사
- 3) 기계설비공사
- 4) **냉장설비공사**
- 5) 기타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 등에 명기된 사항 일체

4. 지급자재 및 별도공사 : **지급자재 없음**

(별도공사) 없음

(필수포함) **냉장설비공사** 등은 필히 포함하여 산정할 것 (도면에 표기된 공사 일체)

II. 일 반 사 항

가. 건축공사

1. 건물개요

1) 구조개요

- 구조체 : 철골조
- 기 초 : 매트기초

2) 내외부 마감재료

- 도면참조

2. 공정별 특기사항

1) 일반시험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기초 지지력 시험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 지정 위치에 3개소 이상 실시하여 기초 바닥 지반 다짐후 지내력 150kN/m ² 확보 후 공사 진행 요함.	시험계획(시험 횟수/위치/방법 등)수립 후 감리 자 승인을 득할 것.
주 요 자 재	콘크리트 :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등 일반시방에서 정한 시험을 실시 후 결과를 제출 요함. 철골: 자재 반입 및 기초검사, 고력볼트 접합시험, 현장용접부 비파괴 검사, 스티드볼트 시험, 내화피복검사 등 패널: 밀도, 열전도율, 내화성능 시험을 실시 후 결과를 제출 요함.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 가 시험을 시행 할 것.
기 타	기타 반입 자재 중 시험성적서 및 품질확인서 제출 이후 발주사무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현장 반입시 무작위 선정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토록 한다.	내화30분 적용판 넬은 필히 시험 성적상의 시공방 법 및 부속자재 를 적용할 것

2) 임시소방시설

- 분말소화기(소화기받침대포함) 3.3KG : 2개
- 소화기표지 : 2개
- 방화포 : 1개
- 비상경보장치(발신기세트+사각경보기) : 1개

3) 착공시 행정서류 작성에 필요한 제반비용 전체 포함.

(비산먼지 등)

나. 토목공사

1) 토공사 : 도면참조

- 다짐 및 지반정리 등에 관한 모든 공사는 포함할 것.

2) 우, 우수공사 : 도면참조

3) 콘크리트 포장공사 : 도면참조

4) 옹벽 공사 : 없음

다. 냉장 공사

- 1) 냉장설비공사 : 도면참조
- 2) 공사 범위
 - 장비설치 부분 : 콘텐츠싱유닛, 유닛쿨러 및 제열히터, 콘트롤트판넬, 전동슬라이딩도어, 에어커튼, 우레탄판넬, 우레탄스프레이 등
 - 설비 부분 : 냉매배관설비, 제어배관설비, 드레인배관설비 등

Ⅲ. 특기사항

1. 본 공사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2항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상주시켜 현장 내 제반공사의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고 공사 기간내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한 도급 공사비 내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명 및 기존건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신청 시에는 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 사용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납부차액은 정산한다.

[증빙자료 인증범위]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가입증명서 및 완납확인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관할 납부기관에 사업장명을 개설 신고하고 납부한 납입증명서 ※당해사업장[서순창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 명의로 납부한 납입증명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금액 중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함. -현장대리인, 현장기사, 청소원 등에 대한 납부금은 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사용된 내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사용내역서	노무자에게 물품 지급근거, 사진, 감리원 확인 자료 등 증빙자료 포함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당해 사업장 명의로 개설·납부한 납입증명서	

▶ 상기 자료 미비 또는 미납 시 준공정산 시 감액 정산함.

2. 용어의 정의

- 1) 계약담당자 : 조합장 또는 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조합의 직원을 말함.
- 2) 계약상대자 : 발주사무소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
- 3)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 4) 설계서 : 설제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함.

3. 설제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관련공사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오류, 누락 등 모순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로 판정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1) 공사도급계약서
- 2) 현장설명서
- 3) 특기시방서
- 4) 설 계 도
- 5) 일반시방서
- 6)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4. 공사비내역서의 제출

-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착공관련 서류와 같이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2) 공사비 내역서 작성시 법정기준 및 요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산재, 고용, 건강, 노인장기,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 3) 공사감독자가 공사비내역서의 내용에 허위 또는 착오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 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공사감독자로부터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총액 입찰로서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비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물량 누락을 이유로 추가지급 또는 설계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배포한 자료 중 현장설명서, 시방서, 설제도면 등 어느 한 곳에라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사 범위에 포함한다.

6. 공사 시공상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사무소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처리한다. 또한, 경미한 설계변경이라도 필히 감독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기타 시공 중 의문사항은 감독 및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하며 수급자의 단독 행위는 금한다.

7. 본 공사 현장에는 설계도서,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현장일지, 지급자재 수불대장, 공정표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정보고서를 감독자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단, 다음과 같은 공정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1) 전체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 - 낙찰 후 즉시 제출
 - 2) 주요 공종별 시공계획서 - 낙찰 후 즉시 제출
 - 3) 월간공정표 - 매월말에 익월분 제출
 - 4) 주간공정표 - 매주말에 익주분 제출
 - 5) 작업일지 - 매일 작성하여 제출
8.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주제작물은 공사 시행전에 계약상대자가 견본품이나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 후 제작 설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9.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K.S 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모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0. 재료 시험의 시기 및 방법 등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단,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또는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모든 시험 비용은 시공자 부담임)
11.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공장가공을 위해 공장에 반입된 물량 또한 인정불가) 이하 세부내용은 계약서상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발주사무소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준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공정에 이르면 사진촬영을 하여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사진은 칼라 사진으로 하되, 스크랩을 작성하여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각1부씩 제출)
- 1) 시공 전 : 주변환경 및 대지의 현황사진을 촬영하여 착공계에 첨부.
 - 2) 시공 중 : 주요공정을 사진 촬영하여 작업일보 제출 시 첨부.
 - 3) 시공 후 :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 시 첨부
13.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 검사자와 감리자의 공동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 1) 주요공정검사 :
 - 기초 철근배근 및 설비배관 상태검사

- 각 층별(지상 1층 바닥~옥상 바닥) 스라브 철근배근 및 설비배관검사
- 설비 배관검사(보온재 시공 전 수압,기밀검사와 병행하여 실시)
- 마감상태검사(골조 완료 후 전체공정 70~90% 진행 중 실시)
-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검사

2) 기성부분검사 : 시공이 완료되어 합격된 부분에 한하며 기성지급을 원칙으로 함.

3) 예비준공검사 : 준공예정일 10~15일전에 검사 실시 (시운전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

4) 준공검사 : 행정기관의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한 준공계를 당사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도록 한다.

※ 상기 각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하여야 하며, 즉시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수정완료 후 감독 및 감리자의 확인검사를 득한 다음 공사를 진행 한다.

※ 공사 중 필요에 의거 감독자의 재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 계약서상의 준공일(용어 정의)

행정기관의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한 준공계를 당사에 제출하여 당사에서 접수받은 날로 한다.

※ 본 공사의 계약서상 준공일에 있어 사용승인서 신청 시 사용승인서에 건축주가 날 인한 날이 계약서상의 준공일이 아님에 유의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5. 본 공사 수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 도로점용, 착공계 제출, 중간검사, 사용검사 등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제반 절차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감리자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인접건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후 공사를 진행토록 하며 이로 인한 민원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보상토록 한다.

16.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 자재단가상승 중이고 수급에 차질이 있으므로 공기를 감안 하여 반영하고 추후 이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없도록 한다.

17.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전기, 통신, 소방, 냉장 등)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전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8. 본 공사 현장 입구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판을 설치한다.

- 90CM*180CM*12CM 규격 판넬에 공사 안내도, 허가표지판 부착

19.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견실시공을 보장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며 부적당한 하도급자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20. 안전망 또는 보호막 설치하는 기존 건물 사용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곳은 모두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1. 공사 중 현장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22. 공사완료시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도록 하며 시공 중 변경 또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토록 한다.
23. 공사 완료 후 준공표지판(동판, 양각 25CM * 40CM)을 발주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양식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주현관 등 일반인이 잘 보이는 곳 선정) 설치한다.
24.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후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3부, CD 1매, USB 1매)
25.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인접대지 소유자와 감독자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측량에 사용되는 경비는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임)
26. 도면열람 및 배부
 - 열 람 :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ID : ap2302, P/w : ap2302)
게스트폴더 -> “서순창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건축)” 폴더
-> 비밀번호 : 0901 “끝”
 - 설계 관련 문의 : 에이피건축사사무소 / 02-899-2301
27. 별도 추가 협의 사항
 - 계약 대상자는 착공 일정을 감독자(농협),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